

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2. 11. 11

도시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1월 3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11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도시위원회(1992. 11. 11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교통과장 안병일)

가. 제안이유

주차장법('91. 12. 14 법률 제4437호)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주차장 설치 권한 : 시장 → 시장 및 구청장
- 주차요금 : 공영(시조례 규정적용) 민영(신고요금)
- 주차장 시설기준 :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
- 구청장의 노상주차장 설치 :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
- 벌 칙 : 과징금(50~250만원), 과태료(40~100만원)
- 시행일 : 1993. 1. 1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: 별첨자료 참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(일문일답식으로 진행)

- 최진관 위원(질의)

조례 제3조 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동 조례 제7조 3항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시설 기준은 부산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.

○ 지역교통과장(답변)

부산시 전역은 일일 생활권으로 요금 적용은 시전역 급지별 동일하므로 별표를 첨부 구 조례를 제정할 시 시 상위조례 요금변동시 구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전 예방코자 함.

○ 최진두 위원(질의)

조례 제8조에 구청장의 주차장 설치 도로폭은 20m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 개설 사업 도로폭 기준은 25m로 시와 구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왜 일관성이 없는지?

○ 지역교통과장(답변)

시의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로폭은 20m로 되어 있음.

○ 구본준 위원(질의)

11월 10일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주차료 누증제 도입 및 노상 주차장 정기 주차권 폐지, 2개급지의 3개급지 조정 등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또다시 구 조례 개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조례안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는지?

○ 지역교통과장(답변)

상황변동을 예상하여 조례제정을 인기할 수 없으며 업무 추진상 조례 제정이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○ 이석래 위원(질의)

민영주차장 요금은 신고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월 20만원까지 받아 타 불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 공영주차장과 같이 적용할 수 없는지?

○ 지역교통과장(답변)

본인이 신고하여도 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별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영주차장과 동일한 요금적용은 근본적으로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도 없어지며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.

5. 토론요지 : 없 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찬성 8, 반대 0)